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40
----------	------

제출년월일 : 2015.5.7.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2013년 1월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 현 조례에 에너지 절약 운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안전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에너지 복지 및 안전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나. 에너지 사용 환경조성 지원 근거(안 제4조)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안 제14조)

라.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시책사업 구체화(안 제16조)

마. 에너지분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근거(안 제16조의2)

바.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영 사항 추가(안 제22조)

사.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사업 재정지원 구체화(안 제27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39조
- 에너지법 제4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2조의5, 제26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
-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경기도 에너지 관리 조례 제22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불임

사전예고결과 : 불임

- 입법예고 : 2015. 1. 20. ~ 2015. 2. 10.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9건 내용반영
 - 의회사무국(전문위원) 【의견5건】
 - (주)삼천리 【의견1건】
 - 안산시의회 【의견1건】
 - 녹색에너지과 자체의견 【의견2건】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조례(전문)
- 방침결정문
- 참고자료
 - 서울시 햇빛발전 협동조합 지원·활성화 계획
 -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산정 예시
 -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2조제14호 중 “에너지절약 및”을 “에너지 절약 및 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모든 시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16. “에너지 안전”이란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말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

제4조제4항 중 “절약 시민실천”을 “절약·복지 및 안전 실천”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에너지이용”을 “에너지 이용·복지 및 안전”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을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연료전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종전 제4항) 중 “태양광 보급지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으로, “태양광 설비를”을 “태양광설비·연료전지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태양광 발전기·연료전지 등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에게 금융권 용자에 따른 이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전물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는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 년마다 산정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제3항 중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시책사업에의”를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모니터링 등 시책사업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에너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 진단 및 교육, 엘이디(LED)등기구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시설개선 분야 등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절약 및”을 “절약 및 안전,”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를 “(위원의 위·해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④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전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절약”을 각각 “절약 및 안전”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절약”을 “절약 및 안전”으로 한다.

제26조 중 “절약문화” 를 “절약, 에너지 복지와 안전 문화”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사업을” 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으로, “적정하게”를 “비용의 일부를”로 한다.

제28조 중 “절약” 을 “절약, 에너지 복지 및 안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녹색에너지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녹색에너지과장 박 양 복
	담당·팀장 직위·성명	녹색성장담당 윤 교 열
	담당자 성명·전화	정 상 희 (행정 292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p> <p>7.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_2)·메탄(CH_4)·아산화질소(N_2O)·수소불화탄소(HFC_S)·과불화탄소(PFC_S) 또는 육불화황(SF_6)을 말한다.</p> <p>14. “시민단체”란 <u>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u>를 말한다.</p> <p><u><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1. ~ 5.(현행과 같음)</p> <p>6. -----</p> <p>----- 제2조제1호 및 제2호 -----.</p> <p>7.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p> <p>14. ----- <u>에너지 절약 및 안전,</u> -----.</p> <p>15.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모든 시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산시와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p> <p>16. “에너지 안전”이란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말한다.</p>
<p>제3조(기본원칙 및 방향)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3조(기본원칙 및 방향)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시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시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 절약·복지 및 안전 실천 ---</p> <p>----- 지원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조성계획 수립)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지속 가능한 <u>에너지이용</u>을 위한 대책</p> <p>7. ~ 8. (생 략)</p> <p>③ (생 략)</p>	<p>제7조(조성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에너지 이용·복지 및 안전</u></p> <p>7. ~ 8.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p> <p>① ~② (생 략)</p> <p>③ 시장은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연면적 1 천 m²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u>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u>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p> <p><u><신 설></u></p> <p>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의 신·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u>태양광보급 지원</u> 프로그램을 준용하여 <u>태양광설비</u>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⑤ (생 략)</p>	<p>제14조(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연료전지 등</u> -----</p> <p>④ 시장은 <u>태양광 발전기·연료전지 등</u>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에게 금융권 응자에 따른 이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현행 4항과 같음) -----</p> <p>-----</p> <p>----- <u>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u> ----- <u>태양광 설비·연료전지 등을</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u><신 설></u></p>	<p>제14조(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p> <p>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는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 년마다 산정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6조(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p> <p>① ~②(생 략)</p> <p>③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u>에너지 절약</u> 문화 확산 및 시책사업에의 참여를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p>	<p>제16조(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p> <p>① ~②(현행과 같음)</p> <p>③ ----- <u>에너지 절약</u> 문화 확산 및 모니터링 등 시책사업의 ----- -----.</p>
<p><u><신 설></u></p>	<p>제16조의2(에너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 진단 및 교육, 엘아디(LED) 등기구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시설 개선 분야 등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에너지 절약 및 각종 시책 추진 현황 3. ~ 4. (생 략) 	<p>제19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에너지 절약 및 안전, ----- 3.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 ② (생략) <u><신설></u>	<p>제22조(위원의 위·해촉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p> <p>④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⑤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⑥ 위원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전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p>
제24조(기능) ----- 수행-----. 1. ~ 3. (생략) 4.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민간의 에너지 절약 실천 지원 5. (생략)	<p>제24조(기능) ----- 심의-----.</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절약 및 안전----- ----- 절약 및 안전 실천 지원</p> <p>5. (현행과 같음)</p>
제4장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 절약 및 안전-----
제2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추진, 에너지 절약문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범시민운동 조직,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제26조(재정지원 등) ----- ----- ----- 절약, 에너지 복지와 안전 문화-----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u>사업을</u> 세대별, 건물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u>적정하게</u> 지원할 수 있다.</p> <p>② ~ ③ (생 략)</p>	<p>제27조(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① ----- ----- -----<u>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u> ----- -----<u>비용의 일부를</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에너지 <u>절약</u> 관련 사업에 공적이 큰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p>	<p>제28조(유공자 표창) -----<u>절약</u>, <u>에너지 복지 및 안전</u> ----- ----- ----.</p>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640
----------	------

제안년월일 : 2015. 5. 2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불확정 개념인 “발전사업자”에 대해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공유재산(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고시금액 적용 가능 규정을 삭제함.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함.

□ 주요골자

- “발전사업자”에 대해 정의함.(제2조제17호 신설)
- “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는 발전 시설의 용량을 산정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7항 단서)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함.(제29조 신설)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발전사업자”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안 제14조제7항 단서 중 “다만, 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는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 년마다 산정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에너지」를 “다만, 「신에너지」로 한다.

안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p> <p>7.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_2)·메탄(CH_4)·아산화질소(N_2O)·수소불화탄소(HFC_S)·과불화탄소(PFC_S) 또는 육불화황(SF_6)을 말한다.</p> <p>8.~13. (생략)</p> <p>14.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民間단체를 말한다.</p> <p><u><신 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 <u>제2조 제1호 및 제2호</u> -----</p> <p>7.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p> <p>8.~13. (현행과 같음)</p> <p>14. ----- <u>에너지 절약 및 안전</u>-----</p> <p>-----</p> <p>15.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모든 시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산시와民間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p> <p>16. “에너지 안전”이란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말한다.</p> <p><u><신 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과 같음)</p> <p>1.~5. (개정안과 같음)</p> <p>6. (개정안과 같음)</p> <p>7. (개정안과 같음)</p> <p>8.~13. (개정안과 같음)</p> <p>14. (개정안과 같음)</p> <p>15. (개정안과 같음)</p> <p>16. (개정안과 같음)</p> <p>17. “발전사업자”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p>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는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 년마다 산정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에너지 -----
	<신 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	제30조(시행규칙) (개정안 제29조와 같음)